| 지식경제부 | 보도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---|
| 2011년 9월 2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장 박병찬, 김도헌 사무관(02-2110-5327) | | |

# KAIST, 국내 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강화 착수

## - 지경부, 대학 자율준수체제 구축 시범사업 실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는 2011년 9월 22일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본관동 제1회의실에서 **국내 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KAIST(총장 서남표)-전략물자관리원(원장 조성균)간 업무협약식을 개최**함.

**< 협약식 행사개요 >**

◇ **일시·장소 : '11.9.22(목) 10:40~13:00, KAIST 제1회의실**

◇ **참석 :** KAIST 백경욱 연구부총장, 전략물자관리원 조성균 원장 등 20여명

◇ **내용 :** 협약체결 및 「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비전」 발표

○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KAIST는 **△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△주요 선진국 수준의 전략기술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수용 △학내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·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**키로 함.

□ 지식경제부는 국내 대학의 **전략기술 인식과 관리역량 제고**를 위해 금번 KAIST를 시작으로 **수도권 및 지방 거점 국립대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**해나갈 계획임.

* 전략기술 : 핵무기,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·생산 관련 기술로서 해외 이전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해 정부의 사전허가 절차 필요

□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협약식에 이어 전략기술 자율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**△선진형 법체계 구축, △전략기술 인식제고, △이행지원 강화, △제도개선 기반구축** 등 **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**를 골자로 하는 **「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비전」을 발표**함.



## 붙임1 전략물자관리원-한국과학기술원간 협약식 개요

### 1. 추진 개요

○ **목적** : 대학 **전략기술 자율관리 구축지원** 및 **표준모델 개발**

* '10년 3개 출연연(전자통신연구원, 항공우주연구원, 화학연구원) 대상 시범사업 실시

○ **일시·장소** : '11.9.22(목) 10:40~13:00, KAIST 제1회의실(본관 1층)

○ **주요 참석자** : KAIST 연구부총장, 전략물자관리원장

### 2. 행사 내용

○ **(협약 체결)** KAIST의 **전략기술관리 지원**을 위한 양 기관간 서명

* 주요내용 : 교육·홍보, 표준모델 개발, 제도개선, 정보·인력교류, 시범사업 실시 등

○ **(비전 발표)** 「**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**」 발표

### 3. 세부 일정

| 시 간 | 주 요 내 용 | 비 고 |
|---|---|---|
| 10:40~11:00 | ·도착 및 환담 | 연구부총장실(본관 2층) |
| 11:00~11:01 | ·개회선언 | 전략물자관리원 |
| 11:01~11:03 | ·KAIST 기술개발 현황 소개 | 한국과학기술원 |
| 11:03~11:05 | ·추진경과 및 지원계획 발표 | 전략물자관리원 |
| 11:05~11:10 | ·기관장 인사말씀 | 양 기관장 |
| 11:10~11:15 | ·협약서 체결 | 양 기관장 |
| 11:15~11:20 | ·기념 촬영 | 양 기관장 |
| 11:20~11:35 | ·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 발표 | 김도헌 사무관 |
| 11:35~13:00 | ·이동 및 오찬 | 영빈관(교수회관 3층) |

## 붙임2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

### 1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

○ 「**전략물자**」란 대량파괴무기(Weapons of Mass Destruction; WMD)와 이의 개발·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·기술·소프트웨어

○ 「**전략물자 수출통제**」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**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,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**은 전략물자의 **수출허가**를 통하여 **WMD 확산 통제**

○ **국제수출통제체제**에서 수출통제 **원칙과 통제품목**을 정하고, 회원국은 **자국법에 반영**하여 통제 (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)

**<국제수출통제체제>**

| 핵무기 | 생·화학무기 | 미사일 | 재래식무기 |
|---|---|---|---|
| NSG[1] ('78) | AG[2] ('85) | MTCR[3] ('87) | WA[4] ('96) |
| 46개 회원국 ('95가입) | 41개 회원국 ('96가입) | 34개 회원국 ('01가입) | 40개 회원국 ('96가입) |

### 2 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

○ 9.11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**국제안보의 핵심현안**으로 대두

○ **UN 안보리결의 1540호**('04.4)를 통해 전략물자 **수출통제제도**는 **국제 규범화**되었고,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

○ 수출통제를 위반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은 **거래부적격자(DL)**[5]에 등재되어 **무역제한, 대외이미지 실추** 등 **글로벌 경쟁력 저하 초래**

1) 핵공급국그룹(NSG : Nuclear Suppliers Group) :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2) 호주그룹(AG : Australia Group) :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3)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 :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) : 미사일 관련 통제
4) 바세나르체제(WA : Wassenaar Arrangement) :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5) 거래부적격자 명단(DL : Denial List)



### 3 우리나라 제도 및 운영 현황

#### □ 개 요

○ '87년 **대외무역법**시행령에 도입, **'03년 상황허가(Catch-All)** 제도 시행
* 국제체제 가입 : NSG('95), AG('96), WA('96), MTCR('01)

○ '05.2월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개통** : 판정·허가 온라인 서비스

○ '07.6월 전략물자관리 지원 전문기관인 **「전략물자관리원」 설립**
* 전략물자 판정, 온라인 시스템 운영, 교육·홍보 및 국제협력 등 지원

#### □ 우리나라 제도 주요내용

○ **(전략물자 고시)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·기술 등**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

○ **(전략물자 판정)**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(자가판정)하거나, **전략물자관리원**에 의뢰하여 **판정**(사전판정)

○ **(수출허가)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받아 수출

○ **(상황허가)** 전략물자 아닌 물자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

○ **(자율관리)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**하여 허가 면제 등 혜택

○ **(벌칙)** 수출허가 등 위반 시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**3년 이내 무역제한**

#### □ 수출통제 운영 현황

○ 우리나라는 최근 시스템 구축, 제도개선 등 **모범이행 국가로 인식**되도록 하는데 **최선의 노력 경주**

○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홍보, 교육 및 이행 지원으로 **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지속 개선 추세**
* 전략물자관리제도 인지도(%) : ('08) 78.2 → ('09) 83.5 → ('10) 85.3

전략기술 자율관리 선진국 도약을 위한

#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

2011. 8.

무 역 투 자 실

전략물자관리팀

목 차
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평가 ····· 2

Ⅲ. 2015 비전 및 정책과제 ····· 3

1.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비전 ····· 3

2.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정책과제 ····· 4

Ⅳ. 향후 추진일정 ····· 6

# Ⅰ. 추진 배경

## ❶ 국제사회의 전략기술[6] 관리강화 요구

□ IT기술의 발달 및 국제교류의 증가로 기술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수출통제 국제기구는 **ITT*** **관리지침을 채택하고 이행을 촉구**

* ITT (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) : 이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기술자료의 전송과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전달 등의 기술지원 행위

< 국제사회의 ITT 관리강화 요구 >

◇ UNSCR 1718·1737호에 따라 ITT 법제화 등 이행계획 제출 ('06.11, '06.12)
◇ WA[7] 및 AG[8], ITT관리지침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권고 ('07.12, '08.4)
◇ NSG[9], ITT 통제방안 논의 중

## ❷ 기술강국 도약에 대비한 자율적 기술관리 문화 조성

□ **기술수출 선진국은 ITT에 대한 포괄적 법제를 완비**하고 특히, 美·英은 민감 분야에 참여하는 **외국인에 대한 비자 관리*** 실시

* 외국인 입국時 불법 기술이전 위험성이 높은 경우 비자 발급을 중단
* 국내 기술유출 적발건수 : (04)26→(05)29→(06)31→(07)32→(08)42→(09)43→(10)41

< OECD 주요국 기술수출 및 전략기술관리 현황 ('08년, 억$) >

| 구분 | 한 국 | 미 국 | 독 일 | 영 국 | 일 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 술 수 출 금 액 | 25 | 919 | 527 | 339 | 215 |
| 기 술 무 역 수 지 비 | 0.45 | 1.70 | 1.21 | 1.76 | 3.71 |
| 전략기술관리체계 | – | ITT법제화<br>비자심사 | ITT법제화 | ITT법제화<br>비자심사 | ITT법제화 |

* 기술무역수지비 = 기술수출액 / 기술도입액

## ❸ 국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

□ 그간의 물품통관 관리로는 통제하기 힘든 **전략기술 무형이전에 대한 자율관리 강화**로 국내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

6) 전략기술 : 핵·생화학무기 등 무기의 개발·생산·사용에 관계된 기술로서 수출통제 국제기구에서 지정
7) 바세나르체제(WA : Wassenaar Arrangement) :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8) 호주그룹(AG : Australia Group) :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9) 원자력공급국그룹(NSG : Nuclear Suppliers Group) :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


# Ⅱ. 현황 및 평가

## (현황) 법제, 이행기반 및 지원도구 미비

□ **기술유출방지제도와의 연계 및 기술무형이전(ITT) 관리규정 미흡**

○ 기술유출방지법과 연계가 미흡하여 **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관리 공백** 발생

* 현재 자체개발 국가핵심기술은 신고만으로 해외 이전이 가능(산기법 제11조④항)

○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수출·상황·중개·경유·환적 허가 등 국제적 수준의 법체계를 구축하였으나, **ITT 분야의 법제화는 여전히 미흡**한 수준

□ **전략기술 보유기관의 인식 및 관리 저조**

○ 국내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은 **다수의 전략기술을 보유**하고 있음에도,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에 대한 **인식 및 관리는 저조**

* '10년 1,889개 기업·대학·연구소 조사결과, 전략기술 보유기관은 296개(15.7%)

□ **제도이행 편의를 위한 지원도구 미비**

○ 물품과 달리 기술은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통해 전략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**기술 보유기관의 자율관리 이행에 애로가 가중**

* 물품의 경우 HS코드입력, 키워드검색 등 다양한 방식의 자가판정 서비스가 제공되며, 매년 전체 판정건수의 77%(9,600건) 가량이 자가판정으로 처리

## (평가) 전략기술 불법유출 및 국익저해 가능성 증대

□ 외국인 접촉 및 공동연구, 기술수출* 확대 등에 따른 **불법유출 위험성 상존**

* 기술수출 추이(억$) : ('05) 16 → ('06) 19 → ('07) 21 → ('08) 25 → ('09) 35

○ 관리 부실로 전략기술이 국제적 제재대상자*에게 이전될 경우 **국가 이미지 실추 및 글로벌 연구협력 위축 등 국가적 손실 막대**

* '11.6월 현재 대학(260여개) 및 연구기관(500여개) 포함 6,000여명이 제재대상자로 지정

□ 국내 기술인력의 인식저조 및 관리미비가 **R&D 협력 고도화를 제약**하고 있어 향후 거대·복합·글로벌화되는 기술개발 경쟁에 뒤쳐질 우려

○ **선진 연구기관은 전략기술 부실관리국과의 핵심정보 공유를 기피**함에 따라,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한 **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차질** 초래

# Ⅲ. 2015 비전 및 정책과제

## 1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비전

###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선진 기술무역 강국 건설

**목표**

◈ 전략기술 자율관리 선진국 도약
◈ 전략기술 관리를 R&D 활동의 기본절차로 확립



| 전략 | 선진형 법체계 구축 | 전략기술 인식제고 | 이행지원 강화 | 제도개선 기반구축 |
|---|---|---|---|---|
| 추진과제 | ①기술의 무형이전 법제화 | ①대학內 세미나 운영, 이수제 도입, 교과목 개설 | ①전략기술 확인도구 고도화 | ①정책자문단 운영 |
| | ②위법사실 자진신고 활성화 | ②출연연 평가항목 연계 | ②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지원 | ②이행기관 협의회 운영 |
| | ③비자심사제 도입 검토 | ③국가R&D 사전확인제 | ③민간컨설팅 활성화 | ③이행지수 개발 |
| | ④기술유출 방지제도와 연계 강화 | ④산업기술 보유기관 인식제고 | | ④이행 실태조사 |
| | | ⑤우수기관 포상 | | |



## 2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정책과제

### ❶ 선진형 법체계 구축

ITT법제화, 자진신고제 도입 및 기술유출방지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전략기술의 **불법유출 방지 및 국가기술 보호**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

□ **(ITT 법제화)** 대외무역법령에 **ITT 행위를 전략기술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규정**하여 국제적 수준의 기술관리 법제 구축

＊ ('11) 대외무역법 개정 → ('12) 시행령 및 「전략물자 수출입 고시」 개정

□ **(자진신고 활성화) 위법사실 자진신고제를 도입**,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역제한 및 벌금 등 **행정벌·형사벌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도화**

＊ 美 : 자진신고제도의 일종인 VSDs(Voluntary Self Disclosure)를 시행중

□ **(비자심사제 검토)** 국내유입 해외인력에 의한 불법유출 관리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및 투자자의 입국비자 발급시 WMD 확산우려 여부를 사전확인

＊ 미국은 비자 맨티스(Mantis), 영국은 ATAS(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) 제도를 통해 민감 분야에 참여하는 외국 인력의 비자관리 시행

□ **(기술유출방지제도와 연계 강화)**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시 전략기술 여부 판정 및 필요시 수출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

### ❷ 전략기술 인식제고

시급한 인지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, 대학·연구기관·국책과제 참여자·산업기술 보유기관 등 **대상별 맞춤형 전략기술 인식제고** 프로그램 가동

□ **(대학) 전략기술 세미나 운영, 기술관리 이수제 도입** 및 **교과목 개설**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 고취 및 연구 인프라 조성

□ **(출연연) 전략기술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정부 출연(연) 평가항목과 연계**하여 연구기관 임직원의 기술관리 관심 제고

□ **(국책과제 참여자) 국가 R&D 사전확인**을 통해 전략기술 가능성이 높은 국책과제는 발주단계부터 수탁기관의 관리주의 촉구

＊ (추진단계) 국가R&D사업 현황조사→지경부 R&D사업 판정→타 부처 확대 실시

□ **(산업기술 보유기관)** 산업기술보호교육 등 **기술유출방지사업*** **추진시 전략기술 관리절차를 접목**시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수출관리 인식 제고

＊ 종합계획 수립,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,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지원, 보안교육 등

□ **(우수기관 포상)** 전략기술 **자율관리 우수기관 격려 및 사기 진작**을 위한 포상제 시행 (연 1회)

### ❸ 이행지원 강화

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 및 확인도구 고도화, 민간컨설팅 인프라 확충 등 연구자의 **이행편의 증진**을 위한 지원 강화

□ **(확인도구 고도화)** 연구자 중심의 **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손쉽게 판단·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확인도구 개발 및 보급 확대**

＊ ('11년) 기계·항공 등 460개 분야 고도화, ('12년) 전기·전자 등 920개 분야로 확대

□ **(관리체제 구축지원)** 전략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**관리조직 구축 및 관리대상 사전 선별**·관리 밀착 지원

□ **(민간컨설팅 활성화)** 전략기술 **컨설팅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**하여 연구기관의 자율관리 운영수준 제고를 위한 **민간컨설팅 활성화**

＊ (추진단계) 컨설팅 기관 인증모델 개발 → 컨설팅 기관 인증 →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

### ❹ 제도개선 기반구축

정책자문단, 이행기관 협의회, 이행지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**정책환류 인프라를 강화**하고 **이행부담 완화**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

□ **(정책자문단 운영)** 「**전략기술 관리제도 정책자문단**」을 운영, 정책 **모니터링** 및 미래지향적 **발전방안 제시, 정책과제 발굴** 역량 강화

□ **(이행기관 협의회)** 이행기관간 기술관리 **모범사례를 확산·전파**하고 정부에 이행 **애로사항을 수렴·건의**하기 위한 채널 구축

□ **(이행지수 개발)** 국내 전략기술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**이행지수 개발 및 기관 평가를 통해 전략기술 관리의 질적 향상 유도**

＊ 제도 인지도, 기술관리체제 구축, 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

□ **(실태조사 실시)**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**수출관리 인지도 및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**하여 추후 **중장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**



## Ⅳ. 향후 추진일정

◈ 무역강국으로서 **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**하고 **국가기술 보호** 및 **이행주체 부담완화**를 위한 **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** 추진

| 전략 | 추진과제 | '11 | '12 | '13 | '14 | '15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선진 법체계 구축 | 1 기술의 무형이전 법제화 | ■ | ■ | | | |
| | 2 위법사실 자진신고 활성화 |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3 비자심사제 도입 검토 | | | ■ | ■ | ■ |
| | 4 기술유출방지제도와 연계 강화 | | ■ | ■ | ■ | |
| 전략기술 인식제고 | 1 기술관리 세미나 운영, 이수제 도입 및 교과목 개설 |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2 출연연 평가항목 연계 | | | ■ | | |
| | 3 국가 R&D 사전확인제 |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4 산업기술 보유기관 인식제고 |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5 우수기관 포상 | | | ■ | ■ | ■ |
| 이행지원 강화 | 1 전략기술 확인도구 고도화 | ■ | ■ | | | |
| | 2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지원 | | ■ | ■ | ■ | ■ |
| | 3 민간컨설팅 인프라 확충 | | | ■ | ■ | ■ |
| 제도개선 기반구축 | 1 정책자문단 운영 | | | | | ■ |
| | 2 이행기관 협의회 설립 | | | ■ | ■ | |
| | 3 이행지수 개발 | | ■ | | | |
| | 4 이행실태 조사 | | ■ | ■ | ■ | ■ |

## 붙임 1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 및 동향

### □ 전략물자 수출통제 배경

○ **동서 냉전시대**에 서방국은 **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(COCOM)**를 결성하여 첨단무기 및 기술의 **공산권 유입을 통제**('49~'94)

- **脫냉전 후**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**4대 수출통제체제**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**우려국가 및 테러집단 유입을 통제**

**《국제 수출통제 체제》**

| 통제체제 |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| 품목수 | 회원국 | 발족 |
|---|---|---|---|---|
| 원자력공급국그룹 (NSG)[10] | 핵무기 (원자력전용, 이중용도품목·기술) | 241개 (원자력전용:131개) | 46개국 | '78년 |
| 호주그룹 (AG)[11] | 생화학무기 (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·기술) | 212개 | 41개국 | '85년 |
| 미사일기술통제체제 (MTCR)[12] | 미사일 및 운반체 (미사일 및 이중용도품목·기술) | 183개 | 34개국 | '87년 |
| 바세나르체제 (WA)[13] | 재래식 무기 (이중용도품목·기술) | 762개 (군용:277개) | 40개국 | '96년 |
| 계 | | 1,398개 / HS (10단위) : 1,964개 | | |

○ **9.11테러 이후 대량파괴무기(WMD) 확산방지가 국제안보의 핵심**으로 등장했으며, 전략물자 **수출통제가 주요수단**으로 부상

### □ 국제규범화 동향

○ **UN**은 **안보리결의 제1540호**('04.4)를 통해 **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국제규범화**하고 회원국들의 **제도이행·처벌을 의무화**

* UN안보리는 제재결의를 통해 이라크(1546호, '04.6), 북한(1874호, '09.6), 수단(1945호, '10.10), 이란(1929호, '10.6), 리비아(1970호, '11.2) 등 11개국 제재중

10) 원자력공급국그룹(NSG : Nuclear Suppliers Group) :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
11) 호주그룹(AG : Australia Group) :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
12)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 :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) : 미사일 관련 통제
13) 바세나르체제(WA : Wassenaar Arrangement) : 재래식 무기·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



## 붙임 2 국내 전략물자 관리제도 운영현황

### □ 개 요

○ **'87년**, 대외무역법시행령에 **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**하고, **4대 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**(BWC·CWC)**에 모두 가입**

* 가입년도 : NSG('95), AG('96), WA('96), MTCR('01), BWC('87), CWC('97)

○ 전략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**전략물자 온라인관리시스템** (Yestrade) **개통**('05.2), **전략물자관리원 설립**('07.6) 등 지원체계 마련

* Yestrade는 전략물자 판정·허가심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효율적 이행에 기여

### □ 수출통제 제도 주요내용

○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조약에서 지정한 **통제 물품** 등을 **지식경제부가 전략물자로 지정·고시**

○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**전략물자에 해당**하는 경우 **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거쳐 수출

**《수출통제 분야별 소관부처 현황》**

| 소관부처 | 근거법령 | 통제품목 |
|---|---|---|
| 지 식 경 제 부 | 대 외 무 역 법 | 산업용품(Dual-Use) |
| | 방 위 사 업 법 | 일반 방산물자 |
| 방 위 사 업 청 | 방 위 사 업 법 | 주요 방산물자 |
| 교육과학기술부 | 원 자 력 법 | 원자력 전용품목 |
| 통 일 부 | 남북교류협력법 | 北韓 반출입 물품 |

### □ 운영 현황

○ **정부**는 **정책방향 결정 및 수출허가 업무**를 수행하고, 판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**전략물자관리원**이 수행

○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**(Yestrade)과 통일부·방사청·관세청 온라인 시스템간 **정보공유** 및 對기업 **수출통제규범 이행편의** 제공

## 붙임 3 주요국 ITT 법제화 사례

### □ 주요국 공통사항

○ 전략기술에 대한 **정의 및 통제예외** 기술을 **규정**

- **(정의)** 전략물자의 개발, 제조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세부정보로서 **기술자료**(technical data) 및 **기술지원**(technical assistance)으로 구분

- **(통제예외)** 일반에 공개된 기술, 기초과학연구에 해당하는 기술(예: 대학 교과목),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·운용·유지·보수 기술 등

### □ 국가별 ITT 통제현황 비교

| 구분 | 법적근거 | 주요내용 |
|---|---|---|
| 미국 | 수출관리법(EAA)<br>수출관리규정(EAR) | – 수출통제 별도 법(EAA)·령(EAR) 운영<br>– 간주수출 : 미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의 유·무형 이전에 대한 통제<br>– 간주재수출 : 외국 내에서 제3국 국적의 사람에게 통제기술의 유·무형 이전에 대한 통제<br>– 비자맨티스 : 비자심사 時 수출통제 요소를 확인 |
| 일본 | 외환법<br>외환령<br>역무통달 | – 전략기술의 대외 거래를 허가대상으로 규정<br>– USB 등이 국경을 넘어 반출되는 행위도 통제<br>– 전략물자 및 기술을 수출하는 모든 사람(기업)에 대해 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 |
| 영국 | 수출통제법(ECA)<br>수출통제령(ECO) | – 수출통제 별도 법(ECA)·령(ECO) 운영<br>– 비자심사(ATAS) : 민감 분야 유학생(석사 이상, 6개월 이상) 비자심사 강화<br>* ATAS : 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 |
| 독일 | 대외경제법(AWG)<br>대외경제령(AWV) | – 기술을 물자에, 무형이전을 수출 개념에 포함시켜 통제<br>– 거주자(비거주자인 독일인 포함)와 비거주자간의 기술지원 통제 |